

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한송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3.

발의자 : 한송연, 이경숙, 박윤옥,
김현택, 손정자, 김상수,
전혜연, 이수련, 김영실,
감자훈민, 이진환, 김동훈,
원주영

1. 제안 이유

기존 문서로 작성하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·개선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전자적 방식의 관리 방안 추가 (안 제12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비용추계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

가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 제목“(관리카드의 작성)”을“(관리카드의 작성 등)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
외의 부분) 중 “제11조에 의한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”를 “관리인은
별지 제1호서식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중화
장실 관리카드 작성 및 청소 상태, 비품 현황 등과 같은 점검 현황
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관리카드의 작성) 제11조에 의한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관리카드의 작성 등) ①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----- -----.</p> <p>②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성 및 청소 상태, 비품 현황 등과 같은 점검 현황 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제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제정 수반 요인

- 제12조(관리카드의 작성 등) ②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성 및 청소 상태, 비품 현황 등과 같은 점검 현황 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 - 점검 관리 솔루션 업체 제안서 금액
 - 초기 셋팅비(QR코드 제작 등) 약 3,000,000원
 - 유지관리비 5,280,000원/년 (440,000원/월 × 12개월)
- ※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청소용역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142개소

4. 작성자

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경선

☑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공중화장실의 관리)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·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(이하 “공중화장실 관리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